

예 산 총 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9,886,911	17,696,607
일반회계	487,997,937	14,639,938
특별회계	101,888,974	3,056,669
공기업특별회계	82,230,332	2,466,91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91,757	602,75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2,138,575	1,864,157
기타특별회계	19,658,642	589,7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82,388	38,47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90,307	14,709
주차장특별회계	1,995,023	59,851
수질개선특별회계	15,890,924	476,72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84,79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